

##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(2016. 9. 27. 현재)

### 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우정사업운영위원회	12	7	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
2	우편요금·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	10	6	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
3	예금자금융용 분과위원회	9	6	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
4	보험금적립운용 분과위원회	9	6	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
5	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	10	5	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
6	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	11	6	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
7	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	11	5	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
8	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	110	56	국가공무원법 제81조

### 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우편취급국	2,051	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